

# 석유산업의 이해 (I)

## 1. 국제석유시장 略史

### (1) 1960년 以前의 국제석유산업

美國과 舊소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유지역인 中東과 北아프리카, 中南美 등에서는 석유산업의 개발·생산작업이 1900년 이후 1950년에 이르는 동안 유럽과 美國 중심의 국제석유자본(8대 메이저)에게 부여되었던 포괄적이권계약을 기반으로 하였다. 당시 석유매장·산유국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부여된 포괄적이권의 계약기간은 통상 60~70년에 걸친 장기적인 것이었다. 석유이권을 얻은 큰 회사들은 광대한 지역에 있어서 베타독점적인 석유사업 조광권을 갖고 소액의 利權料를 지불할 의무만으로서 산유국정부의 의지개입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

산유국정부에 대해 석유회사가 所得稅를 지불하는 제도가 본격도입된 것은 당시로서 선진적 지위에 있던 베네수엘라가 처음이었다. 즉 1943년부터 소득세제를 석유산업에 적용, 1948년에는 새로운 附價稅를 제정하였는 바—석유조업이익의 50%가 정부수입이 되도록 보증하는 이른바 「이익 절반방식」을 실현시킨 것이다.

소득세제의 도입은 利權保有석유회사의 對정부지불방식을, 그때까지 통용되던 계약에 기초한 從量稅의 이권료에서 산유국 國內法에 기초하는 所得稅納入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이때 과세소득은 실현가격 베이스로 계산되므로 美國이외의 지역에서 原油公示價格을 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즉 석유회사는 이 과세소득법 산정기준이 될 原油수출 가격을 널리 公示할 필요가 발생함으로써 이로부터 원유공시가격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익절반방식이 일반화되면서 1951년에 들어 이란 정부는 자국내 석유사업을 독점한 앵글로·이라니안·오일社(Anglo-Iranian Oil Company)를 國有化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해당회사와 그들의 본국정부로부터 직접·간접적 방해를 받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다. 국유화를 시도했던 모사데그政權이 실각한 후, 1954년에 이란에서는 앵글로·이라니안·오일社를 대신하여 美國자본이 40% 지분을 갖는 이라니안·콘소시엄에게 석유개발·생산작업을 청부계약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자면, 국유화와 동시에 설립한 이란國營석유회사(NIOC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가 鑛業權(조광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탐사·개발을 청부맡은 이라니안·콘소시엄에게 전면적인 조업이 주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종래의 이권계약에 기초했던 조업과 달라진것이 없는 내용이다.

1950년대에는 국제석유산업 구조에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 하나는 中東 산유국에서 원유생산량이 착실히 증가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독립적석유회사(이른바 인디펜트 그룹)들이 세계석유사업에 신규참입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원유가격에 하강압력을 주었다.

### (2) OPEC의 설립과 초기성과

산유국에 지불할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된 原油가격은 석유회사가 공시함으로써 「公示價格」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1959년 및 60년에 이르러 原油의 실세(시장)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경향으로 인해 석유회사들은 공시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유국에 지불하는 稅金額이 줄어들었다. 산유국정부로서는 그만큼 석유收入計

성이 감소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방위수단을 강구한다. 즉 1960년 9월 바그다드에서 石油輸出國 회의를 열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의 5개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설립한 것이다. 그 목적은 낮아지던 경향의 석유가격을 종전수준으로 회복시켜 “안정·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만성적인 원유공급 과잉추세에서도 실세가격이 밀도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60년대의 10년간 公示價格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고, 1964년에는 利權料의 經費化도 실현됨으로써 OPEC 초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 이전의 산유국동향은 종래의 이권계약 관계로부터 석유회사와의 상대적 관계로 점차 이행한다는 정도였으므로, 어디까지나 석유회사의 이권구역내에서는 전면적 조업자유가 주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1960년대에는 원유공급상 지구東半球쪽의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선진공업국의 석유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그 동안 계속되던 공급과잉 상태가 상쇄되고 있었다. 더욱이 美國의 달러貨 해외유출이 많아져서 戰後 자유세계를 리드하던 美國經濟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產油國들의 상대적 지위를 강화시켜 1970년 이후 OPEC 得勢를 촉진하는 배경이었다. 그래서 OPEC은 변화국면을 인식하고, 석유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로서 利權方式의 틀을 넘어 근본적 재검토를 하게 된다. 즉 1968년 6월 제16회 총회에서 OPEC은 장차 회원국의 행동통일의 지주가 되는 석유정책 10원칙을 「決議90」으로 채택한 것이다.

### (3) 산유국의 자원지배 과정

石油收入 확대와 함께 OPEC의 또 하나 목표는 자국석유 자원 및 석유산업에 대한 지배권 확립이었다. 그런데 지배권 문제는 나라마다 정치적요소에 큰 영향을 받고 경제·사회적 배경이 다르므로 OPEC내 보편적 수단을 마련치 못했다.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서서히 자원 및 조업에 사업참가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적·단기적으로 자원 및 조업권을 지배하는 國有化방식이었다.

①사업참가방식 - 1968년 「決議90」으로 사업참가원칙을 마련한 OPEC 회원국은 그후 실시의도를 개별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그중 강력했던 것은 야마니石油長官이 재임하던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당시 사우디의 주장은, 국제석유자본과 산유국(정부)가 석유사업을 공동경영하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메이저들의 축적해온 財貨를 평가하여 기존의 이권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산유국정부도 사업주체로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이 사업

참가문제에 대해 페르사灣岸 산유국들은 공동교섭단을 결성, 1972년초부터 국제석유회사와 구체적교섭을 개시했다. 1년 만인 그해 12월 20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부다비(UAE=아랍에미리트연합中일부) 정부측과 그 양국에서 조업하는 외국석유 회사간에 드디어 「리야드協定」이 체결된다.

#### [리야드協定 골자]

- i) 산유국정부는 利權保有者가 갖고 있는 原油생산과 出荷에 관한 권리 즉 조업권의 (working interest)의 25%를 취득한다.
- ii) 1978년 이후 산유국정부는 조업권의 취득비율을 1년마다 5%씩 확대할 수 있으며, 1982년에 이르러서는 6%를 확대함으로써 전체의 51%를 취득할 수 있다.

197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산유국이 종래의 이권보유자(국제석유메이저)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조업권의 일부를 도로 사들이는 것으로서, 利權保有者의 조업자체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原油의 생산과 처분에 대해서는 產油國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 국제석유메이저가 갖고 있는 산유국내에서의 조업권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석유메이저들의 排他的 독점적권리를 인정했던 종래의 포괄적이권이 붕괴된 것이다.

그후 사우디는 아람코(Arabian American Oil Co.) 자산의 100% 접수를 교섭, 1980년에 성공하였다. 이 경우는 쿠웨이트나 기타 산유국에서의 국유화와 다른점이 있는데, 그동안 조업을 해오던 아람코社에 대해 향후에도 신규유전개발을 포함한 석유조업을 그대로 맡아하도록 한 것이며 생산된 원유에 대해서도 상당량을 아람코社에게 매각토록 한 것이다. 사우디는 이 사업참가 후에도 아람코社 주식을 정부가 취득하지 않고, 조업권의 등 자산만을 100% 접수한 다음 아람코 자체는 美國系 메이저4社가 보유하는 체제를 존속시켰다.

②국유화방식 - 국제석유산업에 있어서 자원지배구조 가운데 큰 변화는 국유화이다. 그러나 국유화후에는 그 산유국정부가 석유산업체제를 재편성함으로써 형태변화를 겪게 된다.

• 이라크 : 1961년 IPC(Iraq Petroleum Company)의 미개발 광구를 강제로 반환시킴으로써 그후 IPC와 분쟁이 많았다. 1972년 IPC의 국유화를 선언, 그회사의 조업을 계승하기 위해 국영이라크 석유공사(ICOO=Iraq Company for Oil operation)를 설립했다. 이후의 조업형태는 종래의 이권보유자와 정부와의 관계를 완전소멸시키고 신규국영회사가 독자적으로 조업했다는 점에서 中東최초의 실질적 완전국유화로 알려졌다.

- 리비아 : 1969년의 혁명정권 수립이래 급진정책을 계속 하다가 영국系 BP社를 국유화했다. 이는 이란정부가 페르사灣의 양국분쟁지 아부무사島를 군사점령한데 대해 영국정부가 묵인한 것을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단행된 것이다.
- 이란 : 1951년에 자국내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다음, 기존 石油코소시엄에게 작업청부를 맡겼다. 이는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종래의 콘소시엄에게 포괄적이권협정과 마찬가지의 조업권을 부여한 셈이었다. 그러나 1973년에는 조업권도 완전 장악한다.
- 알제리아 : 독립한 다음해인 1963년에 국영석유회사 SONATRACH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석유의 수송과 판매를 맡았는데, 1967년과 68년에 외국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함으로써 국내의 판매권을 독점한다.
- 인도네시아 : 1960년에 鐵業法으로 광물자원을 자국소유로 선언한 후 독자적인 석유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나라는 1949년에 독립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칼텍스社, 스텠다드社, 셀社가 석유광구를 보유하여 조업을 해왔다. 이들 3개사와 1963년에는 新鐵業法에 의거해 청부방식의 신계약(Working Contract)을 체결했다. 즉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로부터 조업청부를 받은 외국석유회사에게 경영주체성을 주고, 외국석유회사가 투자회수를 포함한 작업비를 회사총수입에서 취득하고 난 나머지 영업수익을 산유국정부 60% : 외국석유회사 40%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3개사가 갖고 있는 기존광구 이외의 석유광구는 정부가 생산분여 방식으로 청부계약함으로써 조업청부를 받은 석유회사가 생산물(原油, 가스)의 40% 이내에서 작업비를 회수한 다음 그 나머지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배분비율은 당초 60 : 40이었으나 점차로 인도네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어 갔다. 1968년에는 그동안의 국영석유회사들을 통합한 형태로 자국내 유일의 석유광업권을 갖는 새국영회사 - PERTAMINA社 - 를 탄생시킨다. 이 페르타미나社가 외국석유회사에게 생산물분여 방식의 조업청부를 맡기고 있다.

#### (4) 자원지배의 확립과 이용방식

1970년 이후 산유국은 석유회사에 대해 財政主權 확립 및 석유산업 조업구조변혁을 잇따라 실현시켰다. 이에 따라 종래의 자원지배구조가 완전 뒤바뀌어 석유자원에 대해 산유국주권이 거의 완전 확립된다. 포괄적 석유이권계약으로 넓은 지역에 독점적 석유자원을 소유·처분하던 국제메이저들은 산유국정부와의 공동사업자로서 그때까지의 이권을 일부 보류하던가 또는 산유국의 청부업체로서 原油생산에

주어지는 지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1970년 이후 오늘날까지 산유국들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설립목적을 거의 달성했거나 또는 적어도 산유국내에서 조업하는 석유회사와의 관계를 완전유리한 조건으로 정돈하는데에 성공하였다. 이제 그들의 과제는 고갈자원인 탄화수소(석유)를 국가이익에 결부시켜 근대화 및 공업화발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영역에서 산유국은 저마다의 경제·사회·정치적 조건을 반영하여 志向의 다양성을 중대시켜간다. 즉 새로운 자원지배구조하에서 새로운 자원조달양식과 산유국의 잉여수입(收入) 활용방식을 모색하는 국제메이저들 그리고 소비국정부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얹혀간다. 구체적으로는 산유국이 사업참가 내지 국유화로 취득한 정부소유原油를 여하히 처분하느냐 그리고 財政收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산유국이 자원을 소유한다는前提에서 이라크처럼 거의 완전히 산유국독자의 조업을 하는 형태, 또는 종래의 利權保有者였던 석유회사가 실제의 조업을 원조하거나 청부맡는 형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 등과 같이 산유국과 석유회사가 산유국내 및 국외에서 下流部門(제제·수송·판매)을 포함한 공동사업을 벌이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자원배분구조이다.

## 2. 原油의 국제가격

### (1) 1970년 이전의 석유가격 변천

무역상품으로 석유가 등장한 19세기 말부터 제2차대전 이전까지는 주로 휘발유·등유 따위의 석유제품으로서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소비자정제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석유무역은 原油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석유시장에는 수다한 변화가 있었다. 그 배경에는 수요와 공급관계로 부터 전쟁이나 각국의 정치적요인이 작용하였으며 특히 국제석유자본(메이저)들의 전략이 중요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OPEC의 정책동향이 결정적 영향력을 보지하고 있다.

세계의 석유가격 형성은, 1920년경까지 美國동해안의 시세가 주도했으며 그 이후에는 주로 美國남부의 멕시코灣岸(Gulf Coast)의 거래가격에 의해 지배되었다. 한동안은 걸프·코스트를 세계석유가격의 기준지점(basing point)으로 하여 세계 어느지역에서 구입할 경우에도 그 출하항구가 어디이던 간에 멕시코灣에서 축적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걸프·코스트(멕시코灣)에서부터 목적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멕시코灣 거래가격에 가산한 것이 그 原油의 인도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이 방식은 실제보다 수송운임을 더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반대로 석유수출업자가 필요 이상의 운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령운임(*Phantom Freight*)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그러다가 제2차대전 중 英國 해군이 印度洋 시장에서 방카油(선박연료)를 사들이게 됨을 계기로 가격체계가 바뀐다. 즉 1943년에 이르러 인도양 서쪽의 中東 지역도 가격의 새로운 기준지점이 되고, 中東 원유는 멕시코灣岸 가격과 동일한 FOB 가격(本船引渡價格)으로 또 하나의 석유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FOB 가격과 수송운임을 합한 금액은, 地中海 중앙부에서 멕시코灣과 中東原油에 대해 똑같게 되는 等價 地点으로 되었는데, 이 지점은 그후 수송유조선 운임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英國 본토이었다가 뉴욕으로 까지 이동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때까지 국제석유자본의寡占下에 있던 석유시장에의 신규참입이 증가함과 동시에原油가격수준은 점차 낮아졌다. 이 때문에 국제석유회사는 산유국정부에 대한 지불액 산정기준이 되는原油공시가격을 1959년 1960년 두번에 걸쳐 인하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과 실세(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좁히려는 것이었다.

이 움직임은 산유국간에 石油收入이 줄어든다는 위기감을 기반으로 하여 단결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OPEC 설립의 직접적誘因으로 되었다. 실세가격은 그후에도 하락경향이었지만 公示價格은 OPEC의 압력때문에 1960년대를 통해 유지됨으로써 양쪽가격의 差가 눈에 띠게 벌어졌다. 1960년대에는 리비아를 비롯한 새로운 원유공급국가가 등장하여 국제석유시장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실세가격을 더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그동안에 세계석유사정은 수급이 안정된 가운데 낮은 가격수준에서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주공급원인 OPEC 회원국에 대한 의존이 커짐으로써 1970년 이후 OPEC의 강한 공세를 불러일으키는 배경이 된다. 그리하여 70년대에 사태는 일변하여 OPEC 산유국은 공시가격의 대폭인상을 획득한다.

## (2) 테헤란協定

1970년 9월에 리비아는 당시 유리한 상황(※스에즈운하의 폐쇄, 페르샤灣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아라비아횡단送油管의 폐쇄, 이에 따른 운임상승 등)을 배경으로 公示價格을 배럴당 30~40센트인상하면서 稅率도 5% 인상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석유전쟁」의 발단을 가져온 것이다.

리비아의 인상은 中東 원유에 과급되고 특히 페르샤灣岸의 重質原油가격을 오르게 했다. 이러한 1차인상이 끝난 후 OPEC 회원국들은 1970년 12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즈에

서 제21회 OPEC 총회를 열었다. 합의사항은 메이저(석유회사)들과 교섭을 개시하자는 것으로서 71년초부터 활성화하면서 OPEC 측은 석유수출금지 가능성도 시사함으로써 71년 2월 회사측과 테헤란協定을 체결한다.

즉 페르샤灣岸 6개 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바레인, UAE)과 13개 石油會社가 테헤란협정을 맺어 1975년까지 단계적으로 原油公示價格을 인상한다는 스케줄을 확정한 것이다.

## (3) 제네바協定

1971년 8월 낙순美國 대통령 성명서를 발단으로 통화불안이 심해지고, 그해 12월의 美달러 平價切下가 시행되자 산유국들은 석유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貨 가치가 줄어드는 실질적 손실을 입는다. 이에 1971년 12월 아부다비에서 제26회 OPEC 총회를 열어 損失 카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을 교섭키로 한다. 그래서 '72년 1월 스위스에서 제네바協定을 체결했다. 이는 테헤란협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석유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네바협정에 의한 자동조정식 원유공시 가격인상은 '73년 4월에 처음 실시되었다. 산유국측은 그 적용대상이 된 '73년 2월의 국제통화변동폭이 크고, 달러貨의 減價로 인해 실질석유수입이 저하됨을 제네바協定만으로 보완하기는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73년 6월 수정안을 채택 제네바補充協定을 석유회사와 체결함으로써 달러貨 가치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시가격 조정방식을 설정한 것이다. 각국통화의 교환가치를 시세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시키게 되자 公示價格은 거의 매달 조정되기에 이르렀다.

## (4) 제1차 석유위기

### - OPEC의 가격결정권 획득 -

1973년 9월의 OPEC 총회 이후 페르샤灣 산유국은 10월 8일부터 석유회사와 교섭개시하여 原油公示價格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그 근거는 ① 선진공업국 인플레이션이 연간 8~9%로 매우 높은 정세에서는 테헤란協定에서 정한 年次의 引上率이 石油收入의 저하를 보상할 수 없다는 점 ② 석유회사의 原油판매이익이 지나치게 증대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산유국들 요구는 배럴당 2달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석유회사측은 교섭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이에 73년 10월 6일에 제4차 中東戰爭(이스라엘과의 전투)이 발발하게 되자 이를 배경으로 산유국측은 공시가격의 대폭인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10월 16일). 드디어 공시가격 결정권을 획득한 산유국은 그로부터 원유가격을 「公示」하는 주체가 되었으며, 테헤란 및 제네바協定은 사실상 실효된

것이다.

이어서 산유국은同年 10月에 인상한 가격을 다음해 74년 1월 1일부터 2배이상으로 인상한다(73년 12월 결정). 즉 OPEC 기준원유가 되는 사우디产 아라비안·라이트 (*Arabian Light*) 原油에 대해 그單位當 정부收入金을 배럴당 7달러로 하여 이를 베이스로 公示價格를 인상하였다. 다시 말해 '73년 12월가격 5.036달러가 단숨에 11.651\$/b로 오른것이다.

### (5) 價格差문제

1973년 10월 이래 OPEC 회의는 기준원유(아라비안·라이트) 가격만을 결정하고 여타원유들은 기준가격에 對比하여 산유국마다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여러가지 原油의 가격차는 유황성분이 낮을수록 그리고 比重(*Specific Gravity*)이 낮을수록 高價로 거래된다(※美國석유협회가 제정한 比重표시 방법은 "API 몇度"로 표시하는데 그 수치가 클수록 原油比重은 낮다=가볍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석유구매자=수요가 부족한 형편의 국제시장에서는 위의 두가지 가격차 기준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새기준을 요하게 되었다. 이에 OPEC가 검토한 방식은 주요시장에서의 개별(특정) 원유의 상대적가치를 기준 원유와의 가격차로 미리 결정해놓자는 것이다. 이를바 「알제리아 方式」으로 동국이 '76년 1월부터 채택하였다. 이 방식에서는 어느 原油를 세계주요시장에서 제품화·판매할 때 얻는 單位매출액과 또 그原油의 出荷항구로부터 해당거래 시장까지의 수송운임이라는 2가지를 기준으로 OPEC 기준원유와의 價格差를 정한다. 뿐만아니라 각시장에 대한 그原油의 수출비율이 加重平均된 수치가 價格差에 고려된다.

### (6) OPEC의 두가지 가격인상폭

제1차 석유위기로 原油가격이 뛰어오르자 소비절약이 일어나 세계석유수요가 계속 낮아진 상태였다. 1975년 9월 OPEC총회에서 기준원유가격이 12.376달러/배럴로 인상된 후, 1년여동안 거치된 상황에서 열린 제48회 OPEC총회(1976년 12월)는 인상폭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두가지로 따로 실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아랍에미리트결합)는 5%, 나머지 회원국 열한나라는 10%를 인상한 것이

다.

이 분열상태는 다음해인 '77년 7월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측이 양보하여 10% 인상파에 일치시키기로 한다.

### (7) 제2차 석유위기에서의 가격흔란

1977년 이래 1년여간 거치되었던 OPEC 基準 원유가격이 '78년 12월 총회에 이르러 또 인상된다. 즉 다음해에 4단계로 인상함으로써 배럴당 12.70달러가 79년말에는 15.54달러에 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78년 가을부터 불온한 정세를 보이던 이란에서 1979년 2월에 회교혁명이 일어나 호메이니가 이끄는 新政府가 섰다. 이 소동으로 인해 이란의 原油생산이 '78년 말부터 거의 정지 또는 격감되었으므로 '79년의 석유수급은 다시 타이트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제2차 석유위기(오일·쇼크)가 래도하는 바, 배럴당 가격이 79년 말 24달러로 급등하더니 '80년 6월에는 28달러로 1년여만에 2.2배가 되었다(아라비안·라이트原油기준).

특히 79년중에는 OPEC 각국이 공급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공식 판매가격에다가 프레미엄을 붙이고 구매상대자별 割增金 그리고 미리 내야하는 前拂金과 石油探查 할증금 따위를 추가부과함으로써 OPEC내 가격체계가 혼란스러워졌다 (=多重價格構造). 그런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제나 급격한 대폭인상에 반대하면서 최저가격수준을 유지했었으나 強硬派인 리비아/알제리아/나이제리아 등은 최고가격대를 택했다.

제2차 석유위기가 거의 끝나간 무렵 1980년 9월, 이번에는 돌연 이란-이라크 戰爭이 발발한다. 中東產油國들은 또 다시 긴장속에 휩싸인다. 그러한 정황에서 열린 1980년 12월의 OPEC총회는 온건파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강경파 리더인 이란으로 갈라져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다음과 같이 결정, 시행한다.

- ①아라비안·라이트原油를 30\$/b에서 32\$/b로 引上한다.
- ②일단은 앞으로의 기준가격(*Deemed Marker Price*)을 36\$/b로 잡는다.

- ③OPEC 원유의 上限價格을 41\$/b로 인상한다. ♦

〈계속 : 金鍾七〉

피땀흘려 이룬 경제 과소비로 무너진다.